

2017년 사업시행자 산정 보상단가

2017. 4.

< 목 차 >

I . 2017년 보상단가 결정 개요	1
II . 이사비	2
III . 분묘보상액	3
IV . 영농손실액	4
V . 적용기준	5
※ 단가 증감내역	6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17년 보상단가 결정 목적

-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손실보상액 산정 시 공통 적용할 보상단가를 결정하여 '17년도 보상대상에 적용

□ 사업시행자 보상단가 산정

- 손실보상액 산정은 보상 대상에 따라 감정평가에 의해 산정하거나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정

<보상액 산정방법>

보상액 산정방법	보상대상	법률규정
감정평가 의뢰	- 토지 및 건축물 등 물건 - 어업권 등 권리 - 농업손실을 제외한 영업보상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사업시행자 직접 산정	- 주거이전비 - 이사비 - 분묘보상액 - 영농손실액	토지보상법 제68조제1항 단서

○ 주거이전비 산정방식 변경

2015년 이전(~2014년)	2015년 이후
직전 년도 분기별 통계자료의 평균치를 활용하여, 매년 초 연 1회 산정	주거이전비 산정일 기준 가장 최근 분기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산정 *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에서 제공하는 정보 활용

II

이사비

□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별표4)

주택연면적기준	이사비 산정기준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33㎡ 미만	3명분	1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33㎡ 이상~49.5㎡ 미만	4명분	2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49.5㎡ 이상~66㎡ 미만	5명분	2.5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66㎡ 이상~99㎡ 미만	6명분	3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99㎡ 이상	8명분	4대분	(노임+차량운임)x0.15

* (노임) 통계작성기관이 작성·공표한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 기준

☞ 대한건설협회 '17년 상반기 공사부문 보통인부 노임단가 적용 : 102,628원

** (차량운임) 최대적재량이 5톤 화물자동차의 1일 8시간 운임기준

☞ 한국교통연구원 2016년도 이사화물운송주선업체 발표 : 244,000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주택연면적	이사비			
	적용금액	노임	차량운임	포장비
33㎡ 미만	634,660	307,884	244,000	82,783
33㎡ 이상~49.5㎡ 미만	1,033,280	410,512	488,000	134,777
49.5㎡ 이상~66㎡ 미만	1,291,610	513,140	610,000	168,471
66㎡ 이상~99㎡ 미만	1,549,930	615,768	732,000	202,165
99㎡ 이상	2,066,570	821,024	976,000	269,554

※ 한 주택에서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면적기준은 세대별 점유면적에 따라 각 세대별로 계산·적용

Ⅲ

분묘보상액

□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

유연분묘 보상액	무연분묘 보상액
분묘이전비*, 잡비**, 이전보조비***의 합계액	유연분묘 이전비 및 잡비의 50% 이하

* (분묘이전비) 4분판 1매, 마포 24미터 및 전지 5권의 가격, 제례비, 노임 5인분 (합장인 경우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 가산) 및 운구차량비

※ 석물(비석, 상석 등) 이전비는 감정평가를 통하여 산정

** (잡비) 분묘이전비 산정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 (이전보조비) 100만원

□ 산출내역

(단위 : 원)

구분		합계	분묘이전비①		잡비 (①×30%)	이전보조비
			분판·마포·전지 ·제례비·노임	운구 차량비		
유연	단장	3,405,650	1,439,000	411,500	555,150	1,000,000
	합장	4,341,000	2,158,500	411,500	771,000	1,000,000
	삼합장	5,089,280	2,734,100	411,500	943,680	1,000,000
	사합장	5,650,490	3,165,800	411,500	1,073,190	1,000,000
	오합장	6,024,630	3,453,600	411,500	1,159,530	1,000,000
	육합장	6,211,700	3,597,500	411,500	1,202,700	1,000,000
	아장	2,283,230	575,600	411,500	296,130	1,000,000
무연	단장	1,058,390	719,500	94,650	244,245	-
	합장	1,526,070	1,079,250	94,650	352,170	-
	아장	497,180	287,800	94,650	114,735	-

IV

영농손실액

□ 산정기준(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도별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대구는 경북, 부산·울산은 경남의 통계 적용)의 직전 3년간 평균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

*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수입 = 농작물수입 ÷ 표본농가 경지면적

□ 산출내역

- '16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단위 : 원, m²)

구분	'16년 농작물수입(A)	'16년 표본농가 경지면적(B)	연간 농가평균 단위경작면적당 농작물수입(C=A÷B)
경남	22,105,000	10,138	2,180.41
경북	23,860,000	12,250	1,947.76

- 영농손실 보상단가

(단위 : 원)

구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			2017년 영농손실 보상단가
	2014년	2015년	2016년	
경남	2,001.08	2,105.23	2,180.41	4,191
경북	2,087.67	1,991.15	1,947.76	4,018

V

적용기준

- 우리 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에 적용하되, 적용시기는 2017년도 보상단가 결정일로부터 2018년도 보상단가 결정 시까지 적용

○ 이사비

(단위: 원)

구분	33㎡ 미만	33㎡ 이상 ~49.5㎡미만	49.5㎡ 이상 ~66㎡ 미만	66㎡ 이상 ~99㎡ 미만	99㎡ 이상	비고
‘15년도	720,370	1,238,800	1,548,500	1,858,200	2,477,600	
‘16년도	654,360	1,091,750	1,364,690	1,637,630	2,183,500	
‘17년도	634,660	1,033,280	1,291,610	1,549,930	2,066,570	
증감	△ 19,700	△ 58,470	△ 73,080	△ 87,700	△ 116,930	

○ 분묘보상액

(단위: 원)

구분	유연단장	유연합장	무연단장	무연합장	비고
‘15년도	3,279,870	4,159,810	1,000,180	1,440,150	
‘16년도	3,354,300	4,263,970	1,032,720	1,487,550	
‘17년도	3,405,650	4,341,000	1,058,390	1,526,070	
증감	51,350	77,030	25,670	38,520	

○ 영농손실 보상액

(단위: 원)

구분	‘15년도	‘16년도	‘17년도	증감
경남	4,166	4,154	4,191	37
경북	4,115	4,081	4,018	△ 63